

의안번호	2206964
의 퇴 인	황정아 의원
회 답 일	2025. 2. 12.
추 계 번호	24F62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부설연구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인상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기업부설연구소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말에서 2030년말까지 5년 연장하고, 감면율을 현행 대비 10%p 인상함에 따라 지방세는 2025년 36억원, 2030년 206억원 등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총 1,039억원(연평균 17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단, 현재 동 감면의 적용기한(2025.12.31.)을 고려하여,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6~2030년간 발생하며, 2025년에는 감면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만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5~2030년, 취득세·재산세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기업부설연구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인상 (안 제46조)	-36	-195	-198	-201	-203	-206	-1,039	-173
- 취득세	-18	-108	-108	-108	-108	-108	-558	-93
- 재산세	-18	-87	-90	-93	-96	-98	-481	-80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율 인상 - 감면율: (대기업) 기술별로 35~50% → 45~60% (중견기업) 50~65% → 60~75% (중소기업) 재산세 50~65%, 취득세 60~75% → 재산세 60~75%, 취득세 70~85%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5년부터 시행된다고 가정

- 향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한 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취득 당해연도에 전액 발생한다고 가정
 - － 취득세는 취득일 후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지방세법」 제20조)
- 단, 현재 동 감면의 적용기한(2025.12.31.)을 고려하여,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6~2030년간 발생하며, 2025년에는 감면을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만 발생한다고 가정
 - － 동 개정안은 부칙 제1조에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2025년의 경우 현행 법령이 적용되고 있어 감면을 인상에 대한 세수효과만 발생

□ 개정안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을 인상의 세수효과에 대해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

- 동 제도는 2019년, 2021년 및 2023년 세법개정으로 기업규모별·기술별 관련 연구소에 대해 감면율이 세분화되고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실적을 조정
- 향후 기업부설연구소의 기업규모별·기술별 관련 연구소 부동산 취득 및 보유비중은 2023년 신고된 법인의 기업규모별·기술별 연구·인력개발비(이하 ‘R&D 비용’) 비중과 동일하다고 가정
 - － 법인의 기술별 R&D 비중은 국세청의 기업규모별·기술별 법인세 R&D 세액공제 실적과 공제율을 바탕으로 역산하여 산정

- ※ 국가전략기술은 기술별 구분시 일반 기술에 포함하여 비중 산정
- 향후 취득세 감면액은 2019~2023년간 조정실적의 연평균 수준에서 개정안에 따른 감면율의 인상을 반영하여 발생한다고 가정
 - － 조정실적의 연평균 수준은 기업규모별·기술별로 산정하여 반영
- 향후 재산세 감면액은 2023년 조정실적에서 개정안에 따른 감면율의 인상을 반영한 후,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가정
 - － 조정실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기업규모별로 산정하여 반영
- ※ 단, 중견기업의 경우 일반 대기업과 구분되어 실적이 집계된 기간이 2년에 불과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일반 대기업과 동일한 연평균 증가율 (4.8%)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가정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1)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제도개요) 동 제도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
 - 동 제도는 2019년, 2021년 및 2023년 세법이 개정되어 기업규모별·기술별로 감면율이 세분화되고 신성장·원천기술 중심으로 감면율이 확대
 - － 2019년 세법개정으로 기술별로 일반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을 구분하여 연구소에 대한 감면율을 차등 적용
 - ※ 신성장·원천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규정된 기술을 의미
 - － 2021년 세법개정으로 기존에 일반 대기업과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받았던 중견기업의 감면율이 세분화되어 적용
 - － 2023년 세법개정으로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소에 대한 감면율이 인상
 - ※ 2023년 개정세법은 2023년 과세분부터 적용

[표 2] 기업부설연구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 주요 연혁

(단위: %)

		2019년	2020~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현행)
대기업 ¹⁾	취득세	35	일반 35 신성장·원천기술 45		일반 35 신성장·원천기술 50
	재산세	35	일반 35 신성장·원천기술 45		일반 35 신성장·원천기술 50
중견기업	취득세	35	일반 35 신성장·원천기술 45	일반 50 신성장·원천기술 60	일반 50 신성장·원천기술 65
	재산세	35	일반 35 신성장·원천기술 45	일반 50 신성장·원천기술 60	일반 50 신성장·원천기술 65
중소기업	취득세	60	일반 60 신성장·원천기술 70		일반 60 신성장·원천기술 75
	재산세	50	일반 50 신성장·원천기술 60		일반 50 신성장·원천기술 65

주: 1. 굵은 글씨는 기존 제도 대비 감면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

1) 대기업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속하지 않는 일반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을 의미

- 개정안은 감면율을 현행 대비 10%p 인상하고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 포함

－ 단,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5년 과세분부터 적용

[표 3] 기업부설연구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현행 및 개정안

(단위: %)

		현행	개정안
감면율	대기업 ¹⁾	(취득세·재산세) 일반35, 신성장·원천기술50	(취득세·재산세) 일반45, 신성장·원천기술60
	중견기업	(취득세·재산세) 일반50, 신성장·원천기술65	(취득세·재산세) 일반60, 신성장·원천기술75
	중소기업	(취득세) 일반 60, 신성장·원천기술 75 (재산세) 일반 50, 신성장·원천기술 65	(취득세) 일반 70, 신성장·원천기술 85 (재산세) 일반 60, 신성장·원천기술 75
적용기한		2025.12.31.	2030.12.31.

주: 1) 대기업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속하지 않는 일반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을 의미

□ (감면실적) 동 조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실적은 2019년 123.4억원에서 2023년 172.2억원으로 증가

-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는 2019년 67.3억원에서 2023년 108.9억원으로, 재산세는 2019년 56.0억원에서 2023년 63.2억원으로 증가

[표 4] 기업부설연구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2019~2023년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23.4	117.7	149.1	170.8	172.2
－ 취득세	67.3	60.9	87.5	103.1	108.9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8.3	3.3	5.5	14.1	31.3
· 일반 대기업	5.8 ¹⁾	16.6	20.3	23.5	1.7
· 중견기업	－	－	－	4.4	7.9
· 중소기업	43.2	41.0	61.7	61.2	68.0
－ 재산세	56.0	56.8	61.6	67.7	63.2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8.3	27.5	30.1	33.1	30.6
· 일반 대기업	16.2	17.9	19.5	21.4	19.6
· 중견기업	－	－	－	0.01	0.2
· 중소기업	11.5	11.4	12.0	13.3	12.9

주: 1) 2021년 세법개정 이전에는 일반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동일한 조항에 따라 감면이 적용되어 실적이 구분되지 않음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2) 추계방법

□ (감면실적 조정) 2019~2023년간 기업규모별 감면실적에 법인의 R&D 세액공제자료를 바탕으로 기술별로 구분한 후, 현행 감면율을 적용하여 조정

- 2023년 신고기준 법인의 기업규모별 R&D 비용을 일반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로 구분하여 비중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 － 2023년 신고기준 법인의 R&D 세액공제액에 공제율을 역산하여 기술별 R&D 비용 비중을 추정
 - ※ 역산시 R&D 세액공제의 기술별 당기분 공제율을 활용
 - － 국가전략기술은 기업부설연구소의 공제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기술에 포함하여 비중 산출

[표 5] 2023년 신고기준 법인의 기업규모별·기술별 R&D 비용 비중

(단위: 억원, %)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세액(A)			공제율 (B)			연구·인력개발비 (A/B)	
	일반 기술	국가전략 기술	신성장 원천기술	일반 기술	국가전략 기술	신성장 원천기술	일반 및 국가전략기술 ¹⁾	신성장 원천기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4,816	11,791	8,229	2 ³⁾	30	20	280,112 (87.2)	41,144 (12.8)
일반 대기업	1,207	136	742	2 ³⁾	30	20	60,779 (94.2)	3,710 (5.8)
중견기업 ²⁾	2,886	9	255	8	30	20	36,102 (96.6)	1,276 (3.4)
중소기업	14,852	32	266	25	40	30	59,487 (98.5)	887 (1.5)

주: 1. ()안은 동일 기업규모내에서 기술별 R&D 비용 비중의 추정치임

1) 일반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비용 추정치의 합산금액임

2)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된지 5년 이내인 기업이나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우대공제율은 반영하지 않음

3) 대기업의 경우 당기분 공제율의 최대치인 2% 적용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기업규모별 감면실적을 일반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로 구분

- 기업규모별 감면실적([표 4])에 신성장·원천기술의 R&D 비용 비중([표 5])을 반영하여
기술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실적을 구분

※ 2019~2021년간 실적이 구분되지 않는 일반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실적은 일반
대기업의 R&D 비용 비중을 반영

[표 6] 기업규모별·기술별 감면실적 추정치

(단위: %, 억원)

취득세		비중	2019	2020	2021	2022	2023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일반	87.2	16.0	2.9	4.8	12.3	27.3
	신성장원천기술	12.8	2.3	0.4	0.7	1.8	4.0
일반 대기업	일반	94.2	5.6	16.1	19.6	22.7	1.7
	신성장원천기술	5.8	0.2	0.6	0.7	0.8	0.1
중견기업	일반	96.6				4.2	7.6
	신성장원천기술	3.4				0.1	0.3
중소기업	일반	98.5	42.6	40.4	60.8	60.3	67.0
	신성장원천기술	1.5	0.6	0.6	0.9	0.9	1.0
재산세		비중	2019	2020	2021	2022	2023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일반	87.2	24.7	24.0	26.2	28.8	26.7
	신성장원천기술	12.8	3.6	3.5	3.9	4.2	3.9
일반 대기업	일반	94.2	15.7	17.2	18.9	20.6	18.9
	신성장원천기술	5.8	0.6	0.6	0.7	0.7	0.7
중견기업	일반	96.6				0.0	0.2
	신성장원천기술	3.4				0.0	0.0
중소기업	일반	98.5	11.3	11.3	11.8	13.1	12.7
	신성장원천기술	1.5	0.2	0.2	0.2	0.2	0.2

- 신성장·원천기술 감면실적 추정치의 경우, 최근 5년간 감면율 인상을 비율로써 반영하여 감면실적 조정
 - － 신성장·원천기술 감면실적은 기업규모별로 2019년 세법개정으로 10%p, 2022년 세법개정으로 5%p 감면율이 인상됨에 따라 감면율 변화를 비율로써 반영하여 실적 조정
 - ※ 일반기술의 감면율은 2022년 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신설 외에 변동 없음

[표 7] 감면율 인상을 반영한 조정 감면실적

(단위: 억원, %)

취득세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금액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일반	16.0	2.9	4.8	12.3	27.3	12.7
	신성장원천기술	3.4	0.5	0.8	2.0	4.0	2.1
일반 대기업	일반	5.6	16.1	19.6	22.7	1.7	13.1
	신성장원천기술	0.3	0.6	0.8	0.9	0.1	0.5
중견기업	일반				4.2	7.6	5.9
	신성장원천기술				0.2	0.3	0.2
중소기업	일반	42.6	40.4	60.8	60.3	67.0	54.2
	신성장원천기술	0.8	0.6	1.0	1.0	1.0	0.9
재산세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일반	24.7	24.0	26.2	28.8	26.7	2.0
	신성장원천기술	5.2	3.9	4.3	4.7	3.9	
일반 대기업	일반	15.7	17.2	18.9	20.6	18.9	4.8
	신성장원천기술	0.8	0.7	0.7	0.8	0.7	
중견기업	일반				0.0	0.2	-
	신성장원천기술				0.0	0.0	
중소기업	일반	11.3	11.3	11.8	13.1	12.7	2.9
	신성장원천기술	0.2	0.2	0.2	0.2	0.2	

- (취득세 세수효과 추계) 향후 취득세 감면액은 최근 5년(2019~2023년)간 조정 감면실적의 연평균 수준에 개정안의 감면율 인상을 반영하여 추정
- 2019~2023년간 기업규모별·기술별 조정실적의 연평균 수준에 개정안에 따른 감면율 인상을 반영하여 추계
 - － 개정안은 현행 대비 기업규모별·기술별로 감면율 10%p 인상
 - － 2025년의 경우, 현행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감안하여 개정안에 따른 감면율 인상분만 세수효과에 반영

[표 8] 개정안에 따른 취득세 세수효과 추계

(단위: 억원, %)

		연평균 조정실적 (A)	감면율		연간 세수효과	
			현행(B)	개정안(C)	'25년 (A×[C-B]/B)	'26년 이후 (A×C/B)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일반	12.7	35	45	3.6	16.3
	신성장원천기술	2.1	50	60	0.4	2.5
일반 대기업	일반	13.1	35	45	3.7	16.9
	신성장원천기술	0.5	50	60	0.1	0.6
중견기업	일반	5.9	50	60	1.2	7.1
	신성장원천기술	0.2	65	75	0.0	0.3
중소기업	일반	54.2	60	70	9.0	63.2
	신성장원천기술	0.9	75	85	0.1	1.0
취득세 세수효과 계					18	108

□ (재산세 세수효과 추계) 향후 재산세 감면액은 최근 5년(2019~2023년)의 연평균 증가율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개정안의 감면율 인상을 반영하여 추정

○ 향후 재산세 감면액은 2023년 실적에 기업규모별로 최근 5년(2019~2023년)의 연평균 증가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후, 개정안에 따른 감면율 인상을 비율로써 반영

－ 2019~2023년 조정실적의 연평균 증가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0, 일반 대기업 4.8, 중소기업 2.9

※ 향후 중견기업의 재산세 감면액은 일반 대기업과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계

－ 개정안은 현행 대비 기업규모별·기술별로 감면율 10%p 인상

－ 2025년의 경우, 현행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감안하여 개정안에 따른 감면율 인상분만 세수효과에 반영

[표 9] 개정안에 따른 재산세 세수효과 추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현행(A)		67	—	—	—	—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일반	27.7	—	—	—	—	—
	신성장원천기술	4.0	—	—	—	—	—
일반 대기업	일반	20.7	—	—	—	—	—
	신성장원천기술	0.7	—	—	—	—	—
중견기업	일반	0.1	—	—	—	—	—
	신성장원천기술	0.0	—	—	—	—	—
중소기업	일반	13.4	—	—	—	—	—
	신성장원천기술	0.2	—	—	—	—	—
개정안(B)		85	87	90	93	96	98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일반	35.6	36.3	37.0	37.8	38.5	39.2
	신성장원천기술	4.9	5.0	5.1	5.2	5.3	5.4
일반 대기업	일반	26.7	27.9	29.3	30.7	32.1	33.6
	신성장원천기술	0.9	0.9	1.0	1.0	1.1	1.1
중견기업	일반	0.3	0.3	0.3	0.3	0.3	0.3
	신성장원천기술	0.0	0.0	0.0	0.0	0.0	0.0
중소기업	일반	16.1	16.6	17.0	17.5	18.0	18.5
	신성장원천기술	0.2	0.2	0.2	0.2	0.3	0.3
세수효과(A-B)		-18	-87	-90	-93	-96	-98

(3) 추계결과

- 기업부설연구소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말에서 2030년말까지 5년 연장하고, 감면율을 인상함에 따라 지방세는 2025년 36억원, 2030년 206억원 등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총 1,039억원(연평균 17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단, 현재 동 감면의 적용기한(2025.12.31.)을 고려하여,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6~2030년간 발생하며, 2025년에는 감면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만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계

[표 10]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5~2030년, 취득세·재산세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기업부설연구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인상 (안 제46조)	-36	-195	-198	-201	-203	-206	-1,039	-173
- 취득세	-18	-108	-108	-108	-108	-108	-558	-93
- 재산세	-18	-87	-90	-93	-96	-98	-481	-80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박정환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정환	02-6788-4835	jhpark83@assembly.go.kr